



# COVID-19 산업별 지침: 소매업

2020년 10월 20일

[covid19.ca.gov](https://www.covid19.ca.gov)



## 개요

2020년 3월 19일, 캘리포니아주 공공보건 담당관 및 캘리포니아주 공공보건부 디렉터는 COVID-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대부분의 캘리포니아주 시민들에게 자택 체류 명령을 내렸습니다.

COVID-19가 캘리포니아주 시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완전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알려진 질병은 매우 경증(일부 사람은 증상이 없음)에서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질병까지 이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과 심장 질환이나 폐 질환, 당뇨병과 같은 중대한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비롯한 특정 집단은 입원 및 심각한 합병증을 겪게 될 위험이 높습니다. 감염자에게 증상이 없거나 아직 증상이 발현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염자와 밀접하게 접촉하였거나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에 함께 있는 경우 전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중요 인프라 업계 직원들을 비롯하여 산업별 또는 직업 그룹별 COVID-19의 감염자 수와 비율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현재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 직장에서 다수의 감염 사례가 발생했으며, 이는 직원들이 COVID-19에 감염되거나 이를 전파할 위험에 처해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직장의 예로는 병원과 장기 요양 시설, 수감 시설, 식품 제조, 창고, 육류 가공 공장, 식료품점이 있습니다.

자택체류 명령이 수정됨에 따라, 직원과 대중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주요 예방 방침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까지 물리적 거리두기
- ✓ 호흡기 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직종의 직원 및 고객/손님의 안면 가리개 사용
- ✓ 자주 손 씻기 및 정기적인 청소와 소독
- ✓ 직원들에게 이와 같은 COVID-19 예방 계획 및 기타 예방 수칙 교육

또한, 직장 내 새로운 감염자를 식별하고, 식별 시 신속하게 개입하며 공공 보건 당국과 협력하여 바이러스의 확산을 중단시키는 적절한 절차를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목적

본 문서는 소매업체에서 직원 및 고객들을 위해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침을 제공합니다. 사업체는 사업체가 속한 카운티의 위험 수준을 파악하고 모니터링해야 하며, 운영에 필요한 조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 **자주색 - 광범위함 - 1등급:** 실내 운영은 허용되나 수용 인원의 25%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식료품점은 수용 인원의 50%로 제한해야 합니다. 모든 소매 운영은 이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 **빨간색 - 상당함 - 2등급:** 실내 운영은 허용되지만 수용 인원의 50%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식료품점은 최대 수용 인원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모든 소매 운영은 이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 **주황색 - 중등도 - 3등급:** 실내 운영이 최대 수용 인원으로 허용되며 소매 운영은 이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 **노란색 - 최소 - 4등급:** 실내 운영이 최대 수용 인원으로 허용되며 소매 운영은 이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카운티 등급 상태에 대한 최신 정보를 보려면 [Blueprint for a Safer Economy\(더 안전한 경제를 위한 청사진\)](#)를 방문하십시오. 지역 보건부가 보다 엄격한 기준 및 다른 폐쇄 조치를 시행 중일 수 있습니다. [카운티의 현지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본 지침은 근로자의 모든 법적 권리, 규범적 권리 및 단체 교섭으로 얻어낸 권리를 박탈하거나 무효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며, 카운티 보건 명령을 포함하지 않고

캘리포니아/OSHA(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직업 안전 건강 관리청)의 모든 기존의 안전 및 보건 관련 규제 요건을 대체하지 않으므로 모든 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괄하지 않습니다.<sup>1</sup> COVID-19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공중 보건 지침 및 주/현지 명령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계속해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캘리포니아/OSHA는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웹 페이지에 게시한 직원 보호를 위한 준수 요건에 대한 캘리포니아/OSHA 지침](#)에서 안전 및 보건 관련 지침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CDC(질병 통제 예방 센터,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는 [사업체 및 고용주 및 음식점과 식료품 소매점](#) 관련 추가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안면 가리개 필수 사용

6월 18일, 캘리포니아주 보건부(Californ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 CDPH)는 [안면 가리개 사용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으며, 이는 바이러스 노출 위험이 높은 모든 공공 및 직장 환경에서 대중 및 직원 모두가 안면 가리개를 사용하도록 하는 전반적인 요구 사항입니다. 모든 요건과 이러한 규칙에 대한 예외 사항을 비롯한 전체 세부 사항은 [지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DPH 안면 가리개 지침](#)은 COVID-19 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의 전파에 대한 현재의 과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추가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CDPH 웹사이트에서 수정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 업무 공간별 특정 계획

- 모든 위치에서 문서화된 직장별 특정 COVID-19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업무 영역 및 과업에 대한 종합적인 위험 평가를 수행하며, 각 시설에서 해당 계획을 구현하도록 담당 직원을 지정합니다.
- [CDPH 안면 가리개 관련 지침](#)을 직장별 특정 계획에 반영하고 예외 사항에 대응하는 정책을 포함시킵니다.
- 직원 또는 고객 중 COVID-19 감염자 발생 시 해당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영업소가 위치한 현지 보건 부서의 연락처 정보를 명시합니다.
- 직원 및 직원 대표와 직장별 계획에 관해 교육 및 전달하고, 직원 및 직원 대표가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 수립된 계획 및 문서를 준수하는지 해당 시설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식별한 결함을 수정합니다.
- 모든 COVID-19 관련 질병을 조사하여 작업 관련 요소가 감염 위험에 기여했을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추가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계획을 업데이트합니다.
- [CDPH 지침](#) 및 지역 보건부의 지시 또는 안내에 따라 직장에 감염자가 발생했을 시 필요한 절차와 프로토콜을 시행합니다.
- 감염된 근로자의 밀접 접촉자(15분 이상 동안 6피트 이내)를 식별한 후 COVID-19 양성 근로자와 밀접 접촉자 격리 조치를 취합니다.
- COVID-19에 노출되었을 수 있는 모든 직원 및 하도급 계약 직원의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지역 보건부에 직장 내 발생을 보고합니다. [AB 685](#)(제84장, 2020년 법령)에 따른 고용주 책임에 대한 추가 정보는 Cal/OSHA의 [강화된 집행 및 고용주 보고 요건](#) 및 [CDPH의 AB 685에 대한 고용주 질문을](#) 참조하십시오.
- 아래 지침을 준수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COVID-19 발병을 초래하여 일시적으로 직장이 폐쇄되거나 운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직원 교육을 위한 주제

- [COVID-19](#)에 대한 정보, 확산을 방지하는 방법, 그리고 중증 질병이나 사망의 위험이 더 높은 사람에 대한 정보.
- [CDC 지침](#)에 따라 체온 또는 증상 확인 등 자택 내 자가 선별 검사 방법.
- 출근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
  - 발열 또는 오한, 기침, 숨가쁨 또는 호흡 곤란, 피로, 근육통이나 몸살, 두통, 미각 또는 후각 상실 증상 발현, 인후통, 코막힘이나 콧물, 구역질, 구토 또는 설사와 같이 [CDC가 언급한](#) COVID-19 증상이 직원에게 나타난 경우, 또는
  - 직원이 COVID-19 감염 진단을 받았으며 아직 격리 해제되지 않은 경우, 또는
  - 또는 지난 14일 내에, 직원이 COVID-19 감염 진단을 받은 사람과 접촉했고 잠재적으로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즉, 여전히 격리 상태에 있는 경우).
- 직원이 COVID-19 진단 후에는 [COVID-19 진단후 직장 또는 학교 복귀에 대한 CDPH 지침](#)을 충족한 후에만 직장으로 복귀.
- 흉부의 지속적인 통증 또는 압박을 포함하여 정신혼란이나 창백한 입술 또는 얼굴 등 증상이 심각해지는 경우 의료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업데이트 및 자세한 내용은 [CDC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초 동안 비누로 문지르는 등 비누와 물로 손을 자주 씻는 것의 중요성[또는 직원이 [CDC 지침](#)에 따라 개수대 또는 손 세정대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소 60%의 에탄올(권장) 또는 70%의 이소프로판올(지켜보지 않는 동안에도 아동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둘 경우에만)을 함유한 손 소독제 사용]. [메탄올](#)이 함유된 손 소독제는 독성이 높기 때문에 어린이와 성인 모두 사용하지 마십시오.
- 근무시간 및 근무 외 시간 모두에서의 물리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아래 물리적 거리두기 섹션 참조).
- 다음을 포함한 안면 가리개(마스크)의 적절한 사용:
  - 안면 가리개는 개인 보호 장비(PPE)가 아닙니다.
  - 안면 가리개는 물리적 거리두기와 잦은 손 씻기에 대한 필요성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안면 가리개는 코와 입을 덮어야 합니다.
  - 직원은 얼굴 커버를 사용하거나 조절 전후 손을 씻거나 소독해야 합니다.
  - 눈과 코, 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 안면 가리개는 공유해서는 안 되며, 각 교대조 후 세척하거나 폐기해야 합니다.
- [안면 가리개 사용에 대한 CDPH 지침](#)에 포함된 정보로, 본 지침은 안면 가리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상황과 예외 상황을 비롯하여 안면 가리개의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주가 채택한 모든 정책과 업무 규칙, 관행을 규정합니다. 또한 교육에는 안면 가리개 착용 예외 규정에 적용되는 사람들에 대한 고용주의 정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시설 내 독립 계약자, 임시직 또는 계약직 직원들이 COVID-19 예방 정책에 대해 적절히 교육을 받고 필수 용품과 PPE를 갖추도록 합니다. 임시직이나 계약직을 공급하는 조직과 사전에 이러한 책임에 대해 논의하십시오.
- 유급 휴가 혜택에 대한 정보는 이를 받을 자격을 보유한 직원이 재정적으로 자택 체류가 용이하도록 해줄 것입니다. [가족 우선 코로나바이러스 대응법\(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에 따른 근로자의 병가 권리를 포함하여, [COVID-19에 대한 병가 및 근로자 보상을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 개별 통제 조치 및 선별 검사

- 교대 근무 시작 시 모든 직원 및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판매업체나 계약업체, 기타 직원에 대한 체온 점검 또는 증상 선별 검사 제공. 체온 점검/증상 선별 검사 담당자가 최대한 다른 직원과 밀접한 접촉을 피하도록 하십시오.
- 가정에서 자가 선별 검사를 해야 할 경우, 이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선별 검사의 대체 방안으로 적합하며, 반드시 직원은 자신의 근무 시간에 출근하기 위해 자택에서 나오기 전에 선별 검사를 해야 하고 위의 직원 교육용 주제 섹션에서 설명해 드린 대로 [CDC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 아프거나 COVID-19 증상을 보이는 직원은 자택에 머무르도록 하십시오.
- 고용주는 필요한 경우 직원이 눈 보호 장비 및 장갑을 비롯한 모든 필수 보호 장비를 사용하도록 제공해야 하고 이를 보장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고객과 정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계산원, 물건을 담아주는 직원 및 기타 직원을 위한 보호 조치가 포함됩니다.
- 고용주는 일회용 장갑 사용이 자주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곳을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증상이 있는지 스크리닝하거나 통상적인 접촉이 많은 물품을 처리하는 근로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고객 또는 동료로부터 항상 6피트 이내에 있어야만 하는 직원은 안면 가리개 외에 2차 방벽(예: 안면 보호대 또는 보안경)을 착용해야 합니다. 모든 직원은 고객과 6피트 이내에서 소비하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또한 직원은 반드시 배달된 물품을 차에서 내리고 보관할 때 보호 장비를 지급 받아서 사용해야 합니다.

- 소매업체는 사람들이 먹거나 마시는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안면 가리개(마스크)를 사용해야 하고([CDPH 안면 가리개 사용 지침](#)에 의해서 면제되는 경우 제외), 물리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할 뿐 아니라, 얼굴을 만지지 말고, 최소 20초 동안 비누와 물로 자주 손을 씻고, 손 소독제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안내 방송이나 전략적으로 눈에 잘 띄는 위치에 그리고 예약 확인서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의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환기, 청소 및 소독 프로토콜

- 가능하면 휴대용 고효율 공기 청정기의 설치와 가능한 최고 효율 제품으로의 빌딩 공기 필터 업그레이드 및 사무실 및 기타 실내 공간에 외부 공기의 양을 늘리고 환기가 잘 되도록 하는 변경사항을 적용합니다.
- 실내 환경에서 공기를 통한 질병 전염에 대한 실내 공기 질 및 환기 지침의 최신 정보는 [CDPH 웹사이트](#)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 휴게실, 식사 공간과 계단, 계단 통로, 에스컬레이터, 난간 및 엘리베이터 조작 버튼 등이 있는 입구 및 출구 공간과 같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구역을 철저히 청소하십시오. 쇼핑 카트, 장바구니, 컨베이어 벨트, 계산대(셀프 계산대 포함), 스캐너, 계산대 전화기, 휴대용 장치, 카운터, 문 손잡이, 선반, ATM PIN 버튼 패드, 고객 지원용 전화기 버튼, 손 세정 시설 등 자주 사용하는 시설의 표면을 자주 살균하십시오.
- 화물 운반대, 사다리, 운반 카트, 출퇴근 기록기, 결제 포털 단말기 및 스타일러스 및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각종 공용 장비를 청소 및 소독하십시오.
- 손길이 닿는 각종 시설들의 표면을 근무 시간을 교대하는 사이 또는 사용자가 바뀔 때마다 청소하고, 특히 업무가 주로 이루어지는 시설의 표면, 도구, 고정식 장비 및 이동식 장비 조작 버튼 및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각종 시설의 표면은 더 자주 청소하십시오.
- 고객이 드나드는 입구 및 출구, 계산대, 탈의실에 손 소독제 및 살균 물티슈와 등의 적합한 위생 용품을 비치해 주시고, 제품을 사용하여 적절한 위생 용품을 갖춘 고객 교체 방을 설치하고, 모든 일선의接客 직원(예: 계산원)에게 개인용 손 소독제를 지급해 주십시오.
- 이러한 위생 시설을 항상 사용할 수 있고 항상 필요한 물품이 준비되어 있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비누와 종이 타월, 손 소독제를 제공해야 합니다.
- [레지오넬라 페렴](#) 및 물과 관련된 기타 질환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간의 시설 폐쇄 후에도 모든 물 관련 시스템과 기능(예: 음수대, 장식용 분수)의 사용이 안전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직원 개인 위생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티슈, 비접촉식 쓰레기통, 손 세정용 비누, 손 씻기 충분한 시간, 알코올을 주 성분으로 하는 손 소독제, 살균제 및 일회용 타월이 해당될 것입니다.

- 살균용 화학 제품을 선택할 때, [환경 보호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등록](#) 목록에 나와 있는 COVID-19 예방용으로 사용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며 제품 설명서에 나와 있는 지침을 따릅니다. 새로 등장한 바이러스 병원체에 효과적인 것으로 표시된 소독제나 희석된 가정용 표백제 용액(물 1갤런당 5테이블스푼), 표면에 사용하기 적합한 최소 70% 알코올이 포함된 알코올 용액을 사용하십시오. 직원에게 화학물질 위험과 제조업체 지침, 환기 요건, 안전한 사용을 위한 Cal/OSHA 요건에 대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세척제 또는 소독제를 사용하는 직원은 제품 사용 설명서에 따라 필히 장갑 및 기타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공공보건부가 권장한 [천식 환자에게 안전한 청소 방법](#)을 따르고 적절히 환기를 합니다.
- 정기적이고 철저한 청소 및 제품 진열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매장 영업 시간을 조정하거나 변경하십시오. 관계자들이 다른 통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품 진열 시간에 시간차를 두십시오.
- 직원이 교대 근무 중 청소 방침을 실천할 시간을 제공합니다. 청소 업무는 직원 직무의 일환으로 업무 시간 동안 할당합니다. 필요에 따라 제3자 청소 업체에 외주 용역을 주는 방식을 이용하면 청소에 대해 충족시켜야 할 요건이 늘어난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되도록이면 움직임 감지 조명, 비접촉식 결제 시스템, 자동 비누 디스펜서 및 종이 타월 디스펜서, 출퇴근 시간 기록 카드 시스템 등의 핸즈프리 장치를 설치하십시오.
- 고객들에게 직불 또는 신용 카드를 사용하도록 권장(예를 들면 안내 표지판을 통해서)합니다.



## 물리적 거리두기 지침

- **경고:** 물리적 거리두기만으로는 COVID-19 전염을 방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 소매업체는 고객들이 물리적인 거리 두기를 준수할 수 있게 시각적인 표시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서 매장 앞 연석 또는 수령 지점을 명확하게 표시해서, 거기에서 구입한 상품을 가정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게 해야 합니다.
- 직원 및 고객 간에 최소 6피트의 물리적 거리두기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를 위해서 물리적인 가림막 또는 시각적 표시(예: 바닥 표시, 색상 테이프, 또는 직원 및/또는 고객이 서 있어야 하는 위치를 가리키는 표지판)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계산대에서 계산원과 직원이 서로 노출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플렉시글라스 가림막 설치와 같은 조치를 취하십시오.
- 고객 및 다른 직원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게 업무 방법 변경을 요청하는 직원의 제안을 수락하는 쪽을 고려해 보십시오(예: 계산원에서 창고 관리로 변경하기 또는 행정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원격 근무로 관리하기).



- 직접 만나서 하는 회의가 꼭 필요한 경우라면 물리적인 거리를 확보하고 물리적인 거리 두기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더 적은 수의 인원이 시설에서 회의를 하도록 회의를 조정하십시오.
- 바이러스 전파를 제한하기 위해 최소 6피트 거리두기를 확보하도록 밀폐된 구역 내에서는 작업자 수에 추가 제한을 적용하십시오.
- 임금 및 시간 규정을 준수하며 직원 휴식 시간에 시간차를 두어 물리적 거리두기 절차를 유지합니다.
- 직원들이 휴게실에서 물리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장벽을 사용하고, 테이블/의자 사이의 거리를 늘려 직원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가능하다면 물리적 거리두기를 보장하도록 차양 커버와 좌석 배치를 사용해 야외 휴게 공간을 만드십시오. 직원들이 휴식 시간 중에 모이지 않도록 하고 안면 가리개 없이 서로 6피트 이내에서 먹거나 마시지 않도록 하십시오.
- 매장 내 주류 바, 병에 담아갈 수 있는 서비스 및 공공 좌석 구역을 폐쇄하고 제품의 샘플 제공을 중단하십시오.
- 가급적이면 매장 전체를 청소한 직후에 고령자 및 의학적으로 취약한 사람들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쇼핑 시간을 따로 정해 주십시오.
- 매장 내 접촉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온라인 주문 및 밖에서 포장된 상품을 받아가는 서비스와 같은 포장 및 배달 서비스를 늘리십시오.
- 물리적인 거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될 수 있으면 입구와 출구를 확실하게 따로 지정하십시오.
- 시각적인 표시를 사용하는 등 밖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고객들도 물리적인 거리를 유지하게 하십시오.
- 물품의 전달이나 배달 시 직원들에게 조수석 창문을 통해서 고객에게 말한다거나 접촉하지 않고 고객의 트렁크에 바로 물품을 싣거나 또는 물품을 문 앞에 두고 가는 방법 등을 통하여 물리적인 거리 두기 수칙을 실천할 것을 장려하십시오.
- 되도록이면 포장된 물품을 받아가는 위치 또는 배달하는 위치를 일정하게 정해서 직원/고객 접촉을 최소화하십시오.
- 되도록이면 선반과 게시판 같은 운반 보조 용품을 설치하여 사람 사이에 물건을 직접 전달하는 일을 줄이십시오. 되도록이면 배달 확인 서명 시 비접촉방식을 사용하십시오.
- 매장 직배송 시간대를 확장하여 배달 이용수를 늘리고 사람들이 몰리지 않게 하십시오.

---

1취약 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요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소매 사업체는 반드시 [캘리포니아/OSHA\(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직업 안전 건강 관리청\)](#)의 표준을 준수하고, 해당 지침 및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와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국\(Californ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 CDPH\)](#)의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해당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운영 방식을 변경할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